vol.1979
2022.3.21.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1979

이주의 초점 | 컨테이너 운임상승에 깊어지는 수출입업체의 한숨
관 세 동 향 | 관세청, WCO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법 령 정 보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통권 제1979호 2022.3.21.
주간 관세무역정보

Contents

04
이주의 초점
· 컨테이너 운임상승에 깊어지는 수출입업체의 한숨

07
수출입동향
· 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수출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 발표
· 2020년 수출 1위 품목, 한국 77개로 세계 10위 기록
· 기표원, 中 등 4개국과 11건 수출 애로 협상 나서
· 봄철 수입증가 농·수산물, 묘목류 검사·검역 특별 강화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中, 올해 5%대 경제성장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 대상 수출기업 33개소 선정
· 환경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낮춘다
· 우크라이나 發 국제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높은 변동성 나타내

06
관세동향
· 관세청, WCO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16
물류동향
· 對 러·우 수출입 물류기업 피해 현실화

17

관세행정실무해설

관세평가실무

·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 제조를 위해 지불한 개발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질의응답사례

· 해외 직구 향신료 통관 여부

23

판례동향

관세판례해설

· 특수관계의 물품 가격 영향에 대한 판례 해설

조세심판결정례

·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47

품목분류동향

세번 바로잡기

· 세폭직물

상식 밖의 상품학

· 지하철 미세먼지·소음 제거 장치 개발

51

최신개정법령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외)

고시

·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

·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

공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

65

게시판

단신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 운임상승에 깊어지는 수출입업체의 한숨

우크라이나 사태 예측 불가에 선복량 해결도 장시간 걸려

코로나19로 촉발된 물류대란이 진정세로 접어들기도 전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수를 만나 수출입기업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3월 15일 발표한 월별 수출 컨테이너 운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전년 말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큰 폭으로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신고운임 평균 월별 추이 (천원/2TEU) ●

원거리 항로(미국 동/서부, 유럽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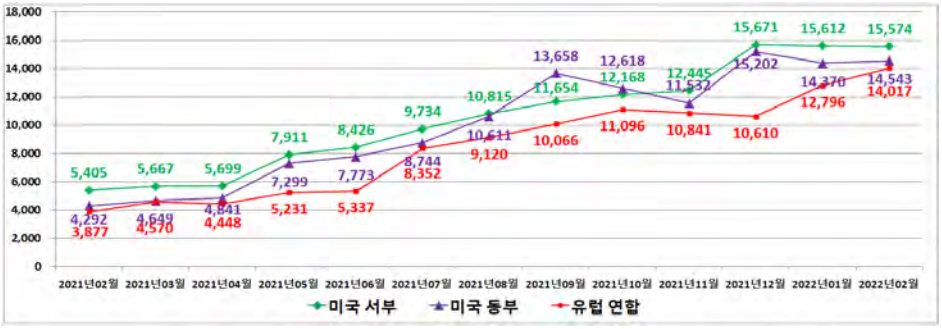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FOCUS

미국 서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88.1%, 동부의 경우 238.9%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했으며 EU는 261.5%의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근거리 노선인 중국, 베트남, 일본 노선은 운임이 오르기는 했으나 150% 이상을 넘은 적은 없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비용도 상승했다. 다만 수출 운임만큼 극적으로 뛰어오르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1일 기준 4625.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배 가량 오른 상태다.

관련 업계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다시 급반등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위기 고조를 꼽고 있다.

애초 지난 1월 영국 해운분석업체 MSI는 올해 벌크선 운임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원자재 공급망이 재편되기 시작하며 벌크선 운임이 급등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대서양에서 운항되던 유럽 벌크선들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향하면서 운항 거리가 대폭 증가해 운임이 급등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양교역소에서 발표한 3월 10일 기준 美 서안에서 50여척의 선박들이 아직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년도 컨테이너 운임상승의 주 원인이었던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운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운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복 공급량에 대해서도 단시일 내에 운임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선박 대란이 발생할 당시 버틸 수 있었던 건 초대형 선박 때문이며, 원양선 선복량을 현재 105만TEU에서 200만TEU급으로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박이 추가로 150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2022년 물류시장을 전망해보는 웨비나를 통해 2023년 후반 또는 2024년에 의미 있는 공급량 증가가 예정되어 있지만 2023년 1월부터 IMO 환경규제 강화가 예정돼 있어 적합하지 못한 선박은 운항에 투입되지 못할 것이라며 2023년 이후 실제 공급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그 피해는 수출입물류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3월 7일 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물류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 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운임상승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선박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까지 수출입업체는 더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WCO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우리나라 역할 확대, 무역원활화 지원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예정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3월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駐 벨기에 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 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언어 기금은 WCO 정기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他 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 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이다.

관세청, WCO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他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WCO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WCO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 요청 증가에 따라 양 기관장은 언어 기금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서명서에 서명했다.

또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주요 애로사항인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소 및 지원을 위해 WCO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분류 결정문을 전산화해 우리 기업들과 세관직원 등이 품목분류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WCO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장은 윤순구 駐 벨기에 유럽연합대사와도 면담을 갖고, 오는 6월로 예정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입후보한 우리나라 후보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WCO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으로 품목분류 협약 등 국제협약 개정·신설, 관세평가, 관세조사, 세관현대화 등 WCO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직위로서 우리나라 후보자는 2019년 한국 관세청 최초로 WCO 고위급 직위에 선출된 現 강태일 WCO 능력배양국장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역할 확대, 무역원활화 지원 등을 위해 WCO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하구현 기자 |

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수출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 발표

올해 말까지 219개 품목 수출금지, 281개 품목은 수출제한

러시아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이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3월 9일 발표한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품목은 281개로 확인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통제 대상인 수출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한다.

앞서 러시아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다. 다만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뒀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이를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며,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하세은 기자 |

● 러시아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예외 ●

(공통 예외)
① 러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②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③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④ 해외 러軍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⑤ 국제 운송차량
⑥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

(수출금지 예외)
①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② EAEU産 상품으로서 EAEU 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등

(수출제한 예외) 카자흐스탄에서 러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

2020년 수출 1위 품목, 한국 77개로 세계 10위 기록

코로나 위기에도 전년대비 6개 증가, 2년 연속 10위로 건재함 과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교역액 감소에도 불구 우리나라 제품 77개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세계 10위에 올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월 15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에 따르면 전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798개)이었고 이어 독일(668개), 미국(479개), 이탈리아(201개), 일본(154개)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6개 증가한 77개로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7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이 11개였다.

산업별로는 화학제품(29개)과 철강·비철금속(20개)이 전체 1위 제품의 63.7%를 차지했다.

1위에 새롭게 진입한 17개 품목 중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 활용되는 편광재료제의 판(24억 7,000만 달러), 레이저기기(22억 4,000만 달러) 등 2개 품목은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한국이 1위, 중국이 2위에 오른 10개 품목 중 탱커, 냉간압연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은 중국과 두 자릿수의 점유율 격차를 자랑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에서 물러난 11개 품목 중 3개 제품에서 중국이 1위로 올라섰다. 메모리반도체도 그 중 하나지만 이는 중국 내 외국투자기업의 생산 및 수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제품 경쟁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본과의 경쟁은 조금 심화된 경향을 보였다. 2020년 한국 1위, 일본 2위인 품목 16개 중 점유율 격차가 5%p 미만인 품목은 7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한국 1위, 일본 2위인 12개 품목 중 4개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무역협회 김아린 연구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세계 교역이 움츠러드는 중에도 우리 수출 1위 품목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수출 주력 품목에서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 주요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 추이 ●

(단위: 개)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품목수 증감(b-a)
	순위	품목 수	순위	품목 수(a)	순위	품목 수(b)	
중국	1	1,716	1	1,752	1	1,798	+46
독일	2	686	2	658	2	668	+10
미국	3	513	3	524	3	479	-45
이탈리아	4	212	4	217	4	201	-16
일본	5	161	5	157	5	154	-3
인도	7	128	6	145	6	148	+3
네덜란드	6	147	7	134	7	145	+11
스페인	9	87	9	96	8	103	+7
프랑스	8	112	8	112	9	99	-13
한국	12	65	10	71	10	77	+6

출처 : UN Comtrade, 배열은 2020년 순위 기준

기표원, 中 등 4개국과 11건 수출 애로 협상 나서

2022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앞서 기표원은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또한 WTO TBT 위원회에서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기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 대응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하세은 기자 |

● 제1차 WTO TBT 위원회 우리측 제기 의제(중국 5건) ●

국가	규제명	규제 개요 및 기업 애로	대응요지
중국 (5건)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 (개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정 개정안(표시사항)을 통보 - (애로) ① 국제적으로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셀 부품에 대한 정보 표기는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 삭제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 초래, ② 국제표준(IEC) 및 유럽 등 국제적 기준과 다르게 파우치형 셀에만 별도 원통 가압시험(바 크러쉬)을 요구해 기업의 인증 부담 가중예외조항 삭제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 초래	- 현행대로 제조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셀 정보 표기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 유지 - 개정안 그대로 시행 예정 시,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규정	①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에 따른 업체 기밀유출 우려 ② 화장품 중문 라벨을 수출국 원래 라벨과 일치하도록 요구 - 각 국가별 라벨 규정과 상충 가능성 ③ 국제관행과 다르게 ISO 발급 GMP 증명서 불인정	① 관련조항 삭제 요청 ② 국제관행에 따라 각 국가별 라벨 규정만 준수하도록 개정 요청 ③ ISO 발급 GMP 증명서 인정요청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 제3자 검사기관으로 현지 기관만 지정	-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을 제3자 검사기관으로 포함 요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 외국산 의료기기 등록수수료의 공장심사비용 일괄 징수 등 차등 운영	- 차별적인 제도 개선 요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안)-지지	- WTO 미통보로 절차 미준수 - 동 개정안의 적용범위,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 WTO TBT 통보 요청

봄철 수입증가 농·수산물, 묘목류 검사·검역 특별 강화

위해 우려 수입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및 병해충 감염차단 집중

위해 농·수산물 차단과 해외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개 부처가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3~5월에 수입된 품목 중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주로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채, 냉이, 호박, 시금치, 양파, 마늘, 마늘종 등 채소류, ▲활·냉장 주꾸미, 활도다리 등 수산물 총 13개 품목이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으로 품목별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은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폐기하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import.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 등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3월 봄철 식재(植栽)에 대비해 팔레놉시스 묘, 자미오쿨카스 묘, 파키라 묘목, 고무나무 묘목, 드라세나 묘목, 녹보수 묘목 및 쿠프레서스 묘목 등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해 전년 3월 중 수입 묘목류 검역건수는 1,780건으로 월평균 대비 76%,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 처분 건수도 121건으로 월평균 대비 25% 높았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 단계에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 현장에는 식물검역관을 2인 1조로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해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제부터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에 1차 위반 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반물량 상당금액이 부과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위반 물량 상당금액의 2배이며, 3차로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까지 부과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비롯해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이와 함께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세은 기자 |

● 음식점에서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넙치, 조피볼락 등 주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변동 없음)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강화, 종전 가중처분 기준 無)	위반물량 상당금액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中, 올해 5%대 경제성장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우리기업, 디지털 인프라 및 친환경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 열릴 전망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우리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월 14일 발표한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5%로 발표하며 주요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로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 육성, ▲기업 세금부담 완화, ▲질적 성장(고품질발전), ▲쌍탄소(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지역개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양회'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통칭이며,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양회를 통해 한 해 국가 경제성장 목표와 중국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다.

올해는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까지 이어지는 중요 행사와 정치 일정이 있어 중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당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직 유임을 결정하는 자리로 시진핑 3기를 앞두고 바오우(保五, 성장률 5%대 유지)'를 사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채택하는 등 향후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디지털 新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동부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를 서부로 전송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동수서산(东数西算)' 공정을 위한 투자 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기업 육성,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등 기업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新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 공정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등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도 견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및 저탄소·청정에너지·친환경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다만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중간재 수출에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하구현 기자 |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 대상 수출기업 33개소 선정

해외시장 조사, 국제인증 취득 등 17개 서비스 바우처로 맞춤형 지원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해외시장 조사, ▲무역실무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국제인증 취득, ▲온·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 등 17개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올해 수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장 및 고도화 바우처 사업에 더해 초보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초보-성장-고도화'의 단계별 성장 사다리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지원예산도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대상기업 15개를 포함해 총 128개 기업이 참가했고, 기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3개 기업(연속지원 9개, 신규지원 24개)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80%까지, 바우처 종류에 따라 2억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하세은 기자 |

● 바우처 단계별 지원 개요 ●

구분	초보 바우처	성장 바우처	고도화 바우처
지원업체	10개소 내외	15개소 내외	8개소 내외
지원금액	5,000만원	5,000~1억원	1억 5,000만원~2억 7,000만원
지원비율	사업비의 80%(중소기업) ~ 70%(중견기업) 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주요 사업 메뉴(총 17개 항목) ●

단계	사업 메뉴	주요 지원 내용
수출 준비	해외시장조사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조사 유료조사 보고서 구입 등
	수출실무 교육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수출 관련 검사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실용실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샘플통관 운송비	해외 바이어 대상 무상샘플 송부 시 통관·운송료 지원
	코로나19 자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생, 방역비용 등 지원
해외 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유통업체 판촉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온라인 판촉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국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비용 등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유명 IP 라이선스 비용
	미디어 홍보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환경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낮춘다

'적극행정제도'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해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 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하구현 기자 |

우크라이나發 국제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 높은 변동성 나타내

한은, 11일 '2022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발표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이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S)의 긴축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으며 주요 가격지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2022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통해 3월 11일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 금리(국채 10년물)와 주요 신흥국의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Powell 美 연준 의장의 3월 금리 인상 필요의 판단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향후 25bp를 넘는 인상도 준비할 것이라는 3월 2일 발표에 따라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했으며, 주요 신흥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터키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환율의 경우 美 달러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美 연준의 긴축 기대 등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유럽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약세를 나타냈다.

신흥국 통화는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브라질 헤랑화는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과 영국 영란은행의 매파적 통화정책 결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일시적 긴장 완화 등으로 美 달러화지수가 하락하며 1,19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다 2월 하순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급변에 따른 긴장 고조,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상태다.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는 美 연준의 긴축 우려에 따른 내외금리차의 상당폭 축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자금수요 등으로 상당폭 하락 했으며, 통화스왑금리(3년)는 국고채금리 상승, 외국인의 금리차익거래목적 외화자금공급 등에도 불구하고 스왑레이트 하락,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자금수요 등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현물환(-8억 2,000만 달러) 및 외환스왑(-8억 2,000만 달러) 거래규모 감소에 따라 2월 중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296억 4,000만 달러)에 비해 15억 9,0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은은 발표했다.

| 하구현 기자 |

對 러·우 수출입 물류기업 피해 현실화

물류비 및 신속 통관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융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물류업계 피해가 속속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는 수출기업에 물류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융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0일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물류사·선사·항공사의 애로 및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물류업계는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국내 화주의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높은 운송비 때문에 화물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 사례와 러시아항 선박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 상황으로 현지 우리 기업이 부품조달 애로, 공장 가동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항공부문에서 한·러 화물편의 경우 급유 차질 등에 따라 국적사 러시아 모스크바행 화물 운항은 일시 중단됐으며, 그나마 러시아 국적사(에어브릿지 카고)의 화물기만 일부 운항 중이지만 물류난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은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선사 등은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 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는 화물운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해 통관할 경우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 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 억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대상 대체 거래선 발굴 전담 무역전문기관(고비즈코리아)을 매칭해 돕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입 물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 제조를 위해 지불한 개발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이 병 용 | Lee & Members 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생산지원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 제조를 위해 지불한 개발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며,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2)]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 참조
2)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제8조에서 규정한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제1조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해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격을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

2.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 제조를 위해 지불한 개발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질의 내용]

○ 중국에 제품가공을 위탁해 제품을 수입하는데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가 필요해 해당 기계 개발비용을 국내업체가 해외에 지불하는 경우 해당 기계개발비용을 수입신고 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금액등 법 30조 제1항 각호의 법정가산요소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해야 함.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5)]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며, 생산지원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그 밖에 비슷한 물품 등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 가산함.

3)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 참조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paragraph 1 참조

5) 동 조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로 상향입법 반영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 시 삭제된 조항임.

○ 구매자가 수입물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개발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면 동 개발비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며,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기계생산업체 등 제3자에게 기계개발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판매자는 제3자로부터 해당 기계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받았다면, 동 개발비용은 생산지원비용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됨.

【 해 설 】 위 사례는 해외 임가공위탁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기계개발비용을 국내업체가 해외에 지불하는 경우 국내업체가 부담하는 기계개발비용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및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세법령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금액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법정 가산요소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6)]

또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7)] 및 수출거래를 위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그 밖에 비슷한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해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격을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6)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

7) '해당 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함(「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참조).

8)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18조 제2호 참조

9)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 1항 (b) (ⅱ) 참조

지급해야 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0)]

위 사례는 해외 임가공위탁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기계개발비용을 국내업체가 해외에 지불하는 경우 국내업체가 부담하는 기계개발비용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질의회신 이유를 살펴보면, 관련 규정은 실제지급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생산지원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그 밖에 비슷한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수입물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개발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면 동 개발비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며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기계생산업체 등 제3자에게 기계개발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판매자는 제3자로부터 해당 기계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받았다면, 동 개발비용은 생산지원비용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됨을 회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되는 경우로 회신한 것은 국내업체(수입자)가 해외에 지불한 개발비용이 해외의 위탁가공업체에게 지불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지불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설비, 변압기, 잔화교환설비, 비상발전기와 기타 설비는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산과정 중 수행되는 테스트에 사용되는 검사장비는 과세대상이 된다[11)]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등 법적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며, 기타 간접적인 금액에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그 밖에 비슷한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0)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제8조에 대한 주해 참조

11) 미국 관세청 관세평가 대사전(545170. 1994.10.27.) 참조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제공

통관

Q 해외 직구 향신료 통관 여부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 향신료(150달러 이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말린 씨앗 형태로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A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돼야 합니다.

계핀, 후추, 팔각, 커민 모두 완전히 가공된 상태가 아니면 검역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들이 완전히 건조, 분쇄, 가공, 포장된 가루라면, 검역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외에 불명확한 가공상태라면 모두 검역대상으로 확인됩니다.

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032-744-5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검역대상은 검역에 합격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Q 버너의 수입요건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너의 수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너는 가스연료용 조리용 기구가 분류되는 제7321.1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

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음의 것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 이동식부탄연소기
- 이동식프로판연소기

관세평가

여행자휴대품 과세 운임 관련

우리나라 수입업체 소속 임직원이 자사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국 공항에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인수해 휴대반입(핸드캐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에 운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제9호에 따른 물품(여행자휴대품)의 운임은 해당 조 제3항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해 운임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② 영 제20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수입

천장용 LED 조명기구의 수입요건

LED 조명기구를 수입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LED 조명기구(천장용)는 품목번호 제9405.11-0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특수관계의 물품 가격 영향에 대한 판례[1] 해설[2]

조 재 민 | 관세청 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Ⅰ. 들어가면서

다국적기업은 세계 각지에 다양한 계열사들이 존재하는바, 필연적으로 본사와 지사 간 거래 또는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 다국적기업군의 계열사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과는 달리 다국적기업군의 계열사 간 거래가격은 기업군 자체의 전사적 이익에 부합되게 결정될 위험이 상존한다.

원칙적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하지만 거래가격 자체가 왜곡된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관세평가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된 거래가격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국적기업 등이 이전가격을 통한 왜곡된 거래가격 형성을 통해 관세를 회피할 여지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WTO 관세평가협정」과 우리 「관세법」은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출 판매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원칙으로 하면서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다국적기업인 국내 장난감업체가 외국 소재 계열사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 과세관청이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하고 대체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서 관세평가 제4방법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이다.

해당 판례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이 어떠한 경우에 왜곡된 거래가격으로 판단돼 관세평가 제1방

1) 부산고등법원 2021.10.29. 선고 2019누2436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7구합24425 판결
2) 해당 기고문의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배제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을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Ⅱ. 처분 경위

1. 원고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싱가포르 소재 A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미국에 소재하는 B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A법인의 자회사이며 B법인의 손자회사다. 한편 본사인 B법인은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자인 네덜란드 소재 C법인의 지분도 100%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수출자인 C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

2. C법인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벤더업체들이 생산한 이 사건 물품을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하며, 물류창고에 제품별 재고 유무를 확인하고 원고 그룹의 아시아 지역 본부인 D법인에 수입 주문을 하며, D법인은 수출자인 C법인에게 원고의 주문 내역을 통보한 후 물류창고에 제품 선적을 요청한다. 물류창고가 해당 제품을 선적해 원고에게 운송하면 수출자인 C법인은 원고에게 송장을 발행하고 원고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C법인에게 지급한다. 즉 이 사건 각 물품의 주문 접수 그리고 물류창고에 대한 선적 지시, C법인에게 구매 내역 통보 등은 원고 그룹의 아시아 지역 본부인 D법인이 수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이 수입통관될 때 비로소 수출자인 C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송장을 통해 수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입가격은 D법인의 TP manager가 결정했다.

3. 원고는 C법인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하면서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하는 표준 Ex-factory price에 mark-up을 가산한 가격을 이전가격으로 해서 거래가격으로 산정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mark-up에는 C법인이 제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해 지출한 툴, 디자인 및 개발을 포함하는 지원비용, 간접제조비, 수입물품에 체화된 무형자산, 물류비용, 해상 운임 및 보험료과 정상이윤이 포함된다.

4. 처분청은 2016년 1월경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2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수입가격 결정방식인 원가가산방법에 근거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원고에게 2011년 및 2015년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실제 결정방법, 근거자료, 결정 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원고는 처분청에게 이전가격 결정 내역을 제출했지만, 공장도가격, mark-up 자료, 운송료에 관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처분청 확인 결과, 2010년경 국내의 제3자 수입업체도 원고와 동일한 이 사건 브랜드 완구류를 수입했는데, 원고의 수입가격은 제3자 수입업체의 수입가격 대비 27% 및 61% 정도였다. 또한 원고가 2010년경

부터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10개 모델의 2010년경 또는 2014년경 최고 수입가격은 제3자 수입업체의 2010년경 수입가격 대비 37.8% 및 71% 정도였다.

6. 그리고 미국 소재 본사인 B법인은 원고 그룹 내 계열사의 이전가격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 매년 TP Study를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하고 있는데, TP Study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했고, 거래가격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수익률 지표는 아시아 내 소재하는 동종 산업의 업체로서 비교가능한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사용했다. TP Study에 의하면 원고의 2012년 및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직전 1개년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4분위값과 직전 3개년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4분위값을 초과한다. 2014년도 TP Study의 결론에는 "아시아 판매계열사는 영업이익률 적정범위인 4분위값을 고려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7. 원고와 국내 경쟁업체의 2010년 또는 2014년의 매출총이익률, 판관비율, 영업이익률 평균값을 비교하면 원고가 국내 경쟁업체보다 약 2배 높다. 그리고 수출자인 C법인이 판매한 물품 중 일부는 원고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일부국가에도 판매했으며 비교 대상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면 수출가격이 동일하다.

8. 처분청은 원고와 C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거래가격을 부인했다. 그리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후, 「관세법」 제33조에 근거해 이 사건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에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족세액을 추징했다.

Ⅲ. 1심 판결

1. 1심은 결론적으로 원고와 수출자인 C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즉 1심은 ① 이 사건 물품의 가격 결정방법과 가격 협상 여부, ② 원고의 거래가격과 국내 제3자의 거래가격 차이, ③ TP Study에서 나타난 비교수익률 지표와 국내 경쟁업체 사이의 매출총이익률 등 차이, ④ 일부 물품에 관한 C법인의 원고 및 다른 국가에 대한 판매가격 차이 등 4가지를 중심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2. 먼저 이 사건 물품의 가격 결정방법과 가격 협상 여부와 관련해 1심은 원고가 구체적인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가. 즉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할 당시 원고는 거래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거래가격을 결정했는지를 기준으로 고려해볼 때, 원고는 주문 당시 거래가격을 인지하지 못했고, 거래당사자인

원고나 C법인이 아닌 D법인이 가격을 결정했으므로, 원고는 협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게다가 원고와 C법인 사이에 수입물품에 관해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 그리고 원고는 거래가격이 원가가산방법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TP Study에는 오히려 거래순이익률법을 기초로 이전가격이 산정된다고 기재돼 있는 점, 적정한 mark-up이 가산됐는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원가가산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3. 다음으로 1심은 원고의 거래가격과 국내 제3자의 거래가격 차이를 고려해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했다. 즉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동일물품들의 가격차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크다면, 일부 저가의 거래가격 부분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판단했다.

가. 원고의 2010년경 해당 브랜드의 완규류 122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국내 제3자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의 27% 및 61%에 불과했다. 그리고 원고가 2010년경부터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10개 모델의 2010년경 또는 2014년경 최고 수입가격은 제3자 수입업체의 2010년경 수입가격과 비교해도 37.8% 및 71%에 불과했다. 이러한 거래가격 간 현저한 차이는 원고와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국내 제3자 수입업체에 비해 동종물품 수입량이 많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물류·유통·광고 등)나 부담하는 위험이 크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제3자의 경우 물품의 수입 판매만을 담당하고 마케팅 활동은 D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된 반면, 원고는 국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서 비용도 부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수입가격이 제3자의 수입가격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국내 마케팅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원고의 수입가격이 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다.

다. 그러나 1심은 비특수관계자이면서 국내 제3자 수입업체인 E법인의 사례와 원고와 미국 본사 B법인 간 대금 지급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의 경우 D법인이 전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의 경우는 원고 스스로 국내 마케팅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D법인과 E법인 간 체결된 공급계약서는 모든 마케팅 비용에 대한 책임은 D법인에게 있고, E법인은 D법인의 사전 허가 없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통상의 마케팅 비용은 D법인과 E법인이 동등하게 부담지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1심은 이러한 계약서 조항만으로 D법인이 국내 제3자 수입업체의 마케팅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국내 마케팅 활동과 비용부담을 원고가 맡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는 없는 점,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본사인 B법인 등으로부터 인건비, 활동비, 경비 등으로 미화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는 이러한 비용을 '브랜드 홍보를 맡고 있는 한국팀에서 발생한 간접경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원고가 국내 마케팅 책임·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4. 그리고 1심은 미국 본사가 작성한 TP Study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 그룹의 이전가격은 적정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즉 해당 TP study에 따를 때, 원고의 2012년 및 2014년 비교수익률 지표는 10.25% 또는 12.93%로서 아시아 내 비교 대상업체의 4분위값(0.9% 및 5.7%)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또한 원고의 판매관리비가 동종 업체보다 2배 가량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이전가격 자체가 저가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5. 1심은 수출자인 C법인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판매한 동일 모델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들의 비교뿐만 아니라, C법인이 제3국 수입자에게 판매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과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 간 차이도 비교분석했다.

우선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C법인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물품과 동일 모델인 물품을 제3국에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C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 수출가격과 아시아 지역 내 일부 국가에 대한 동일 모델 물품 수출가격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수출자인 C법인의 원고에 대한 수출가격과 동일 수출자에 의한 아시아 내 업체에 대한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비교대상이 된 제3국 수입자인 아시아 내 업체도 원고와 동일하게 B법인, C법인 및 D법인과 같이 원고 그룹에 속하므로 수출자인 C법인과 아시아 내 업체도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출자인 C법인과 해당 아시아 내 업체 간의 거래가격은 원고 그룹의 내부적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비교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자 간 내부결정 가격인 이전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거래가격인지 검토하기 위해 또 다른 이전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원고가 제시한 아시아 소재 동종물품 수입자는 아시아 내 업체 중 일부 업체에 불과하며, 제시된 비교 대상 품목도 극히 일부 품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 단위로 구분하면 400건이 넘으며 전체세액이 아닌 경정세액만 50억원이 넘는바, 원고가 제시한 극히 제한된 비교대상 및 자

료는 이 사건 물품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1심은 원고와 일부 아시아 내 업체의 수입가격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Ⅳ.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원고의 수입신고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거래가격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시를 하지 않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Ⅴ. 시사점

동 판결은 다국적기업들의 TP Study에 따른 이전가격이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거래가격인지를 「WTO 관세평가협정」이 제시한 3가지 방법론에 기초해 판시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판결은 크게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전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했다.

즉 ① 통상적인 상관행상 이뤄지는 가격 결정방법인지, ② 이전가격 도출 방법이 적정한지, ③ 동종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적정한 가격인지 등을 통해 특수관계의 가격영향 여부를 판단했다.

전통적으로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영향 유무는 거래상황 검토 방법과 비교검사에 의한 간이한 방법이 사용된다. 거래상황 검토 방법의 경우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항 (a)에 규정돼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이를 국내법화했다.

즉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는 세관당국이 특수관계의 가격영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거래상황 검토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 예시로서 ① 가격의 결정방식이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판매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결정방식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했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물품이 대표적인 기간 동안 판매될 때 실현되는 전반적인 이윤 중 대표성 있는 이윤을 물품원가에 가산해 금액을 도출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가격으로 향후 그 정도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비교하는 방법 등을 설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할 당시 거래가격 자체를 계열사 간 구조적인 이유로 인지할 수 없는 점,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르면 거래계약 당사자가 거래가격을 결정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

약당사자 이외의 자가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이 사건에서 제시된 원고 그룹의 이전가격은 TP Study를 보더라도 내국세 관점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고려요소는 「WTO 관세평가협정」이 제시한 접근방법 중 '① 가격의 결정방식이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1심은 '원고와 수출자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과 '국내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 수입업체와 동일수출자의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비교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WTO 관세평가협정」이 제시한 접근방법 중 '② 판매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결정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1심은 '원고와 수출자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과 '국외 제3자 수입업체와 동일 수출자의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비교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한 1심의 판결은 적정했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WTO 관세평가협정」이 제시한 특수관계의 가격영향 판단 방법 중 3번째 방법론은 물품의 원가에 대표성 있는 이윤을 가산해 산출한 금액과 원고의 수입신고 가격을 비교해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즉 물품의 원가에 이윤을 가산하되 대표성 있는 이윤을 가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국외 제3자 수입업체와 동일수출자의 동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으로서 '아시아 일부 국가에 소재하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제시했다. 그리고 특정 3가지 모델 물품의 예시를 언급하되 해당 수출가격은 'EX-Factory 값'과 'Mark-up and Freight 값'을 더해 산출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 제시했다.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Mark-up and Freight 값'의 경우 대부분 업체와 원고가 동일한 값을 가졌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이윤 등(Mark-up and Freight)은 동일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이윤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이윤을 대표성 있는 이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 판결의 경우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형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판결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대해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다만 동 판결은 원고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 거래가격(관세평가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배제되고 최종적으로 관세평가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된 사안이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거래가격 배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제4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함을 이유로 원고가 승소했다. 과세관청의 상고로 현재 소송 계속 중이며, 제4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석할 예정이다.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번호** : 조심2020관0110(2021.12.31.)
- **청구법인** : ○○○
- **주　　문** : ○○○ 세관장이 2020.5.18., 2020.8.11., 2020.10.30. 및 2021.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5.부터 2019.1.31.까지 특수관계자인 ○○○ 소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20.2.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비용은 하자보증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하자보수처리비용에서 유상으로 수출된 고장품(KBB, Known Bad Board)의 가격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쟁점 하자보증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0.3.2. 청

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번호 ○○○ 건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4.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5.18., 2020.8.11., 2020.10.30. 및 2021.1.18.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각각 '적부심 결정 전 쟁점②~⑤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0.12.23.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대가로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이하 순차적으로 '제1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2.25. 청구법인에게 종전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따라 과세하였던 쟁점①~⑤ 부과처분 및 과세전통지 건에 대해서 그 적용법조만을 제35조(제6방법)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아직 과세처분되지 아니한 수입신고 번호 ○○○건에 대하여 제6방법 하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원 총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⑥ 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⑤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3.4., 2020.5.27. 및 2021.3.29. 처분청에 쟁점①·②·⑥부과처분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 합계 ○○○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5., 2020.6.9. 및 2021.4.8.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2020.6.23., 2020.8.14., 2020.11.6., 2021.4.9. 및 2021.7.6. <별지 1 : 게재 생략>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바도 없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수입물품의 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려면 ① 하자보증책임이 판매자에게 있고, ② 그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는 대가로 거래가격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수입 당시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5.9.18. ○○○와 2014.9.28.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Distributor Agreement(이하 '쟁점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 공급계약서에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판매자인 ○○○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고, 오히려 제3.2조에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자보증 및 사후서비스 보증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서 ○○○는 청구법인과 제3자에게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 공급계약서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제한된 보증 ○○○은 같은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의미하는데, 위 계약서 제14조는 ○○○와 청구법인 간 상거래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지, ○○○가 국내 소비자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쟁점물품에 동봉된 보증서(이하 '쟁점 보증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보증서에는 하자보증책임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보증서상의 하자보증책임과 쟁점 공급계약서 제14조상 하자담보 책임은 그 범위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

즉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아닌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므로 ○○○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품성'에 대한 보증을 하지만,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성'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조상의 결함 등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 보증정책은 현지법인이 있으면 현지법인, 현지법인이 없으면 지역 내 판매법인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의 홈페이지 ○○○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 등 현지법인이 없는 곳은 지역 내 판매법인인 ○○○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 구입 후 1개월 내에 고장이 날 경우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의 하자보증이고, ○○○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쟁점보증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나, 해외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는 하자보증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 처분청의 질문에 대해 ① 제7.5조는 보증기간 외의 보증 의무를, ② 제14조는 보증기간 내의 세부사항을 다룬다는 취지와 함께, ③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시장, 즉 국내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모든 보증 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답변 ②, ③을 하나의 답변으로 오해하여, 제14조에 따라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책임을 ○○○가 부담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비용을 할인받았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9.7.26. 처분청에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보증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의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청구법인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이행을 위해 '판매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하고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다면, ○○○(주)의 회계처리 사례에서 보듯이 충당부채를 계상할 수 없고, 판매자에 대한 채권으로 표시하거나 매출원가에서 공제되었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하자보증비용을 할인받은 바도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는 것'은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가격을 할인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구매자의 하자보증비용이 가격에 고려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21.5.6. 선고 2018두56619 판결), 쟁점 공급계약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을 할인받기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내국세법상 이전가격 결정 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이 공제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이 고려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관세는 각각의 수입물품 하나하나에 부과되는 대물세(對物稅)이자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수입신고 단위로 부과되는 수시세(隨時稅)이므로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하려면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그 가액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확정되어 있던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일 뿐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한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제1방법이고, 다만 제1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제1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가격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9관75, 2020.12.3. 등).

설령 처분청의 과세방법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별 가산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관세는 대물세의 특성상 개별 수입물품 하나하나에 하자보증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금액에 따라 매번 다르고 그 편차도 다양하여, 어떤 물품에 얼마만큼 하자보증비용이 발생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 시점에 개별 물품별로 하자보증비용을 각각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 세관장은 종전 관세조사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공급계약서에 제14조가 도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하자보증의 주체가 청구법인에서 ○○○으로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인 2007.5.2.부터 2013.9.30.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왔고, 2013.10.17.자 판매대리점계약[2013.10.17. 청구법인과 ○○○ 간 체결(2012.9.30. 효력 발생)된 판매대리점계약, 이하 '수정공급계약'이라 한다] 개정 시 제14조가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 업무상 변동도 없었는바, 제14조의 도입 전후로 청구법인의 하자보증에 관한 실제적인 절차 및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 세관장은 선행수입물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 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이전 가격을 그대로 인정(제1방법을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 세관장의 2차 관세조사 시 위 수정공급계약서가 ○○○ 세관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 세관장이 관세조사 대상기간(2012.9.30.부터 2013.9.30.까지) 중에 이미 발효되었던 수정공급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 세관장이 2차 관세조사 시 위 수정공급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조사권을 가진 과세관청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가산세 부과처분이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적법하더라도, 쟁점 부과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산세와는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발급하여 주는데, 이는 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원래 돌려주어야 할 세금(매입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세정의실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② 국내거래에서 과소신고하는 경우와 달리, 수입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탈루

를 목적으로 과소신고할 유인이 적으며, ③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세관과 수입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경과실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과소신고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인바, 위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가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과소신고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판단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영역인바, 처분청조차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당초 제1방법에서 제6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건과 같이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심급별로 판단을 달리하다가 6년 7개월이 경과한 2021.5.6.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대법원 2021.5.6. 선고 2018두56619 판결, 이하 '쟁점 하자보증판례'라 한다)되는 등 하자보증비용의 가산 여부는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둘째, 쟁점물품은 대부분 관세율이 0%로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조심 2020관70, 2020.12.2.).

셋째, 과세가격 과소신고를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실무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안한 점을 감안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더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 ②~⑤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및 의견청취 의무가 있는바(「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대법원에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 결정 및 이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한 과세를 취소(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두695 판결)한 바 있고, 최근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러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한 바 있다.

쟁점 부과처분 중 과세전적부심 결정일인 2020.12.23.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⑤ 부과처분은 과세전통지일인 2020.3.2.을 기준으로 3개월 이

내에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외 「관세법」 제118조 제1항 각호 내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다.

(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은 ○○○에게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 공급계약서 제7.5조와 제14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제7.5조는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기간 1년) 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보증기간 내의 세부사항을 다룬다고 답변하였다.

즉 쟁점 공급계약서 제14조는 무상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으로, ○○○가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표준보증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보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청구법인의 손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이 ○○○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2018년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제출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에게 하자보증책임이 있다는 쟁점 공급계약 내용과 일치 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예상 매출액에서 목표 영업이익·예상 영업비용·기타 매출원가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기타 매출원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 시 공제된다고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에 대한 부분도 고려된다고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 공급계약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이 ○○○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인 ○○○를 대신하여 하자보증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시 쟁점 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이 반영(할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공급계약 제3.2조와 제7.5조를 근거로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공급계약 제3.2조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마케팅하고 공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유지하라는 것일 뿐,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조항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한다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자보증이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공급계약 제7.5조는 청구법인이 설명한 것처럼 보증기간 외의 보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에 수반되거나 법률에 따른 ○○○의 제한된 보증에 따른 혜택을 보유한다" 내지 '판매대리점은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이라는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하자보증책임은 ○○○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재무제표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쟁점 하자보증비용에 대해 판매보증충당부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 건 하자보증의 부담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공급계약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이 ○○○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쟁점물품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국내 회계처리 내역만으로 청구법인과 ○○○ 간 체결한 쟁점 공급계약서의 법률적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이고, ○○○로부터 사전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공급계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관점에서' 하자보증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만 '완제품(FG, Finished Goods) 가격으로 ○○○가 수출자에 송금한 비용은 ○○○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는 쟁점 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을 예상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매출원가에 반영(할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 시 고려된 하자보증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하자보증 수행의 대가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간접지급액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받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쟁점 하자보증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하자보증판례 등은 모두 거래가격 결정 당시 수입자가 하자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체결한 계약상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에게서 완전히 면책된다는 점에서 이 건과 다른바, 판매자인 ○○○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이 건에 해당 판결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수입자가 하자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이 당초 예상한 할인금액보다 크거나 적더라도 그 손실과 이익은 모두 수입자에게 귀속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하자보증판례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고, 쟁점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쟁점 공급계약서 제14조는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증책임의 주체가 수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1999년에 최초로 공급계약[1999.8.1. ○○○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변경 전 사명이다)와 ○○○ 소재 ○○○ 간 판매계약, 이하 '최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3년에 이를 개정(수정공급계약)하면서 신설되었고, 이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거나 처분청에 질의회신을 하는 등의 노력 없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간접지급금액을 자의적으로 누락시켰는바, 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할 수입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방법과 달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새롭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1방법에서 제6방법으로 변경했던 이유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할인)된 하자보증비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은 전체 회사 수준에서 적정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한 여러 비용 중 하나에 불과하고, 각 물품별로 예상 및 실제 하자보증비용이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하자보증에 따른 할인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최종 적용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제6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가격에서 할인된 정확한 하자보증비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하자보증비용 전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것은 「관세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하자보증판례는 수입자와 판매자 간 체결된 공급 및 판매계약서에 수입물품의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사례로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하고, 하자보증이 수입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이상 해당 하자보증비용은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 건의 경우

에는 쟁점 공급계약서의 문언상 하자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증은 쟁점 판매자의 책임이라는 점이 명백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령에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한다는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공급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에게 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를 대신하여 수행한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할인받았음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신고누락한 귀책이 존재한다.

(나) ○○○ 세관장의 2차례에 걸친 관세조사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 세관장의 2010년 및 2013년 관세조사 시 하자보증에 대한 자료를 ○○○ 세관장에 제출하였고, ○○○ 세관장은 청구법인과 ○○○ 간 계약관계, 청구법인의 하자보증비용 부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제1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시 ○○○ 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가 현재 처분청에서 검토한 계약서 등 모든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자료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 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시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 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으로도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와 관련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 하자보증비용의 신고누락은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그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 세관장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도 하자보증비용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이 존재한다는 계약서의 문언 내지 홈페이지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처분청의 해석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쟁점 하자보증판례에서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어서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는 납세자가 사전에 스스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의 신고누락이 경미한 과실이라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시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판단한 사실이 없고, 심사결과 통지서 내용으로도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자보증책임의 주체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3년 수정공급계약 체결 시 제14조가 신설되었음에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6항 제2호에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의 주의 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⑤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경우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 개정 시, 관세의 경우 1999.12.28. 법률 제6046호로 「관세법」 개정 시 각 도입되어 2000.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와 관세는 각 세금의 특성이나 실무 현황에 맞게 서로 다른 제도로 도입 및 시행되었다.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된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 유보규정이 없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불복 고시」'라 한다) 제39조에서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령에는 국세기본법령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 유보' 조항이 없으면서 「관세법」 제21조 및 제38조의3에서는 증액경정의 필요 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정을 하여야 위 각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관세불복 고시」 제39조는 이러한 법령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집행명령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진다.

한편 1999.12.28.자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개정 요강을 보면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경정을 유보하는 규정을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자는 국세와 관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의도적·명시적으로 「관세법 시행령」에 적부심 결정전 처분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관세의 경우 품목분류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극히 단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는 상황이 빈발할 것이 우려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적부심 결정전 처분 유보 규정을 두기가 어려웠고, 수입신고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과세실무나 세목의 특성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관세법」상 그것은 달리 입법되고 개정되어 온 것인바, 「관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준용규정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면 관세 경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저 「관세법」이 적용될 따름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이하 '쟁점 적부심판례'라 한다)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4 제4항의 경정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단인데,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절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바, 쟁점 적부심판례를 관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중대한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1.2.17. 선고 2019구합54917 판결)하였는바, 「관세법」이 적용되는 적부심 결정전 쟁점 부과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쟁점 적부심판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2020.4.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그 결정통지가 있기까지 4차에 걸쳐 청구법인의 항변과 처분청의 답변이 있었는바, 이는 쟁점 적부심판례에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과세전통지된 건 중 일부분에 대해 적부심 결정전 부과처분이 존재하나, 그 부분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취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만을 달리(처분 사유 변경)하여 원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권리구제 권한을 침해받은 바도 없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30일 내에 하라는 규정은 훈시규정(감사원 2008.10.1. 결정 2008-감심-255호)이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다양한 주장을 개진할 때 이를 충실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허다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추가 항변 등을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바, 관세 사건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 처분을 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헌법」 제107조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이 사법부에 있으므로 「관세불복 고시」 제39조 제1항이 집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임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임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권한을 존중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인바, 만연히 「관세불복 고시」 제39조 제1항의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④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보증수리 업무처리 방식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1988.11.11. ○○○ 소재 ○○○가 ○○○% 출자하여 ○○○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09.12.14. 현재의 상호명 ○○○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2010.5.21. ○○○의 ○○○% 자회사인 ○○○ 소재 ○○○(이하 '○○○'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지분 ○○○%를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3.31.까지 판매용 완제품은 ○○○ 소재 ○○○(이하 '○○○'라 한다)로부터, 하자보증용 물품은 ○○○로부터 수입하였다가, 2012.4.1.부터 ○○○로부터 판매용 완제품 및 하자보증용 물품을 모두 수입하는 것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명의 운영직원과 ○○○명의 재택근무 상담사(AHA, At Home Advisors)로 구성된 ○○○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제품의 보증수리 업무는 ○○○에서 승인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SP, Authorized Service Provider)인 ○○○ 서비스 등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제품보증 관련 비용을 부담하나, ○○○ 및 기타 관계사들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판매보증비(하자보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추정원가로 인식하고, 역사적 경험에 따라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이를 판매보증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또는 위탁업체에서 하자보증 처리 시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의 수리 가능 여부 및 교체 대상 등을 판단하나, 하자보증 대상 여부 및 하자보증비용 등과 관련하여 ○○○나 ○○○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2018년 국세청에 제출한 2017년 통합기업보고서에서 표준 국제 보증 제공 의무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 보증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개별기업보고서에서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모든 온·오프라인 제품에 대하여 제품보증 위험을 부담하나, 국내 제3자 고객의 제품보증 클레임은 ○○○에 전가시키므로 제한적인 보증위험을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고장품(KBB)을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회수(통신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한다)하여 ○○○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고객에게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하자보증용 대체품을 ○○○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하자보증용 대체품은 재생품(KGB, Known Good Board)과 신품(New)으로 구분되고, 하자보증용 신품과 재생품의 수입가격은 동일한데, 신품의 경우에는 ○○○가 OEM 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기준 하자보증용 ○○○의 재생품 및 신품의 수입가격은 ○○○로 동일한데, 신품의 경우 ○○○는 OEM 업체로부터 ○○○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각 지역의 국가별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현지법인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 및 ○○○가 각각 하자보증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자보증 의무자로 게재되어 있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1년 제한보증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보증 의무자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며, ○○○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쟁점보증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최초공급계약에 따라 2007.5.2.부터 2010.9.30.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2010.11.1.부터 2010.11.12.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입 이후에 거래가격을 소급하여 인상(수정신고)한 ○○○의 당초 신고가격과 대체품으로 수입하는 재생품의 거래가격만을 부인하였고, 그 외 완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나 신고가격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사 내용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초공급계약서 제2조 및 제7조의 내용은 쟁점 공급계약서 제3.2조 및 제7.5조와 거의 동일하고, 쟁점 공급계약서 제14조와 같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최초공급계약 및 수정공급계약에 따라 2010.10.1.부터 2013.9.30.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2013.10.14.부터 2013.11.29.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TPF(Transfer Pricing Factor, 이하 'TPF'라 한다)를 0%로 적용한 ○○○ 등의 거래가격만을 부인하였고, 그 외 완제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나 신고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내용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과 ○○○ 간 2013.10.17.에 체결(양 당사자가 서명)한 수정공급계약은 2012.9.30.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정공급계약서 제14조에 쟁점 공급계약서 제14조와 동일한 계약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2013년 ○○○ 세관장의 관세조사 시 수정공급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과 ○○○는 2015.9.18. 쟁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효력은 2014.9.28.부

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수정공급계약서와 거의 동일하다.

(마) 처분청은 2019.2.1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 공급계약서 제7.5조 및 제14조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9.3.15. 처분청에게 제7.5조는 보증기간 외의 보증 의무를, 제14조는 보증기간 내의 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모든 보증 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완제품 가격으로 ○○○에 송금한 금액에 고려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은 순이익율법에 따라 제품군별 ○○○로 목표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표준원가(Standard Cost)에 가산율을 곱하여 분기별로 결정되는데, TPF는 제품군별 매출액에서 표준원가·기타 매출원가·영업비용 및 영업이익률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역산하여 산출되고, 각 항목의 금액은 직전 2분기 실적치와 향후 2분기의 예상치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결정 예시에서 '기타 매출원가'(OCOGS, Other Cost of Goods)에는 Warranty Claim·phone support·운임 및 물류비용 등이 포함되고, 판매보증비용은 '기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TPF 계산 공식에 따라 고려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20.3.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의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부담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와 하자보증용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 및 과세전통지 ○○○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0.12.23.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에게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받았으나 할인받은 금액과 실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재조사한 후 제1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아) 처분청은 위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2.2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할인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가격 결정방법만을 제1방법에서 제6방법으로 변경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와 2020.3.2.자 당초 관세조사 결과 통지한 사안(적부심 결정전 쟁점②~⑤ 부과처분을 말한다)에 대해서도 재조사 결과와 같이 동일하게 처분 사유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하자보증비용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이전에 실제지급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자보증비용이 채권·채무 상계에 갈음하여 간접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지급되거나 확정되는 비용이므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공급계약서 제7.5조 및 제14조의 규정,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상 하자보증 위험부

담의 정도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닌 ○○○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또는 TPF) 산정 시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기타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해당 비용만큼 할인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외형상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신품으로 교체하여 주고 있는데, ○○○는 해당 무상서비스용 신품을 OEM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바, 이는 ○○○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 하자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인)하는데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6방법 하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 세관장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증책임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도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제1방법)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제6방법 하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거나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2013년 수정공급계약서가 갱신되면서 제14조가 신설되었는바, 이는 하자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가 ○○○로 변경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3년 ○○○ 세관장의 관세조사 당시 수정공급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수정공급계약서의 체결일자도 2013.9.28.이어서 당시 심사대상 물품들이 수정공급계약서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등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자보증비용의 가산 여부는 세법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고, 위 가산세 면제 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귀책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하자보증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귀책이 없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불복 고시」 제39조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부심 결정전 쟁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및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조심 2020관120, 2021.11.16.(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하였는바,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을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폭직물

김 송 미 | 중앙관세분석소

어망, 안전망 등 다양한 망들이 일상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망은 귤과 삶은 계란 등을 담은 주황색 망이 아닐까 싶다. 망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물처럼 짜거나, 실을 교차해 열 용융으로 결합해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되며 재료,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합성모노필라멘트사(횡단면 치수 1㎜ 이하)를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예각으로 겹쳐 만든 이음새가 없는 관 모양의 직물로 제4602호로 신고됐다.

먼저 관세율표 제46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 〈중략〉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 〈중략〉 …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이 아니므로 제46류에서 제외되며,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직물'이 세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세폭 직물 :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 직물을 포함한다. … 〈중략〉 … (3) 이음새가 없는 관(管) 모양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 이하인 것. 그러나 스트립 모양 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 모양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한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나 제5801호(velvet)까지 속하는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직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오로지 앞에서 설명한 (1)부터 (4)까지에서 설명된 기준에 의하여 이들 직물과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1부 주제9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총설 중 '(C) 직물'에서는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 분류하는 직물은 방직용 섬유사[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하는실과 제5607호의 끈, 배의 밧줄 등], 로빙,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루프웨일사, 세폭리본, 브레이드, 세폭직물[위사 없이 경사로만 접착시켜 구성된 것 등]을 경사 직기와 위사 직기에서 교차시킴으로써 제직한 것이"이라며, "그러나 직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 … 〈중략〉 … (b) 제5801호의 파일 직물이나 셔닐 직물, 제5802호의 테리타월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 직물, 제5803호의 거즈,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 제5806호의 세폭 직물과 제5809호의 금속사·금속드리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직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횡단면이 1㎜이하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예각으로 겹쳐 만든 이음새가 없는 관 모양의 직물로 평폭 30㎝ 이하이므로 세폭직물에 해당하여 제5806.32-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 품명	신고 세번(세율)	희보 품명	정정 세번(세율)
WATERMELON MESH BAG	4602.90-0000 (FCN1 0%)	Narrow woven fabrics	5806.32-0000 (FCN1 3.2%)

지하철 미세먼지·소음 제거 장치 개발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은 지하철도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소음 저감형 팬리스 집진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구간은 차량의 바퀴와 레일의 마찰로 전동소음이 발생하고, 철도가 이동하면서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오염물질이 터널, 승강장, 차량 내부로 유입되면서 승객과 유지보수 작업자 등 많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흡음블럭, 벽체 흡음재, 터널 환기구에 대형 미세먼지 집진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비마다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선로 옆쪽에 '소음 저감형 팬리스 집진장치'를 설치해 소음과 공기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이는 철도 선로변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께를 얇게 만들어 모듈화시켰고, 기존 장치들과 달리 팬, 모터, 집진필터 등이 없기 때문에 물 세척이 가능하며, 유지관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 5호선에 한달 가량 현장시험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집진성능이 질량농도 기준으로 평균 9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 관세율표에서는 공기청정기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 제8421-(B)호에서는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 가스나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고 설명하고 있다.

단 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가정형의 경우에는 제8479호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된다.

최신 개정 법령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 개정
- 「관세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시

-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
-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

공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32516호, 2022.3.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207조에 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

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text{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times \frac{B}{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text{손실발생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text{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text{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6조의2제3항 중 "제156조제6항"을 "제156조제6항·제16항"으로 한다.

제2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3.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취득가액 등을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132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7조제3항 중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해서는"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을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으로 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text{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frac{\text{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산한 금액}}{\text{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137조에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text{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times \frac{B}{C}$$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10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⑬ 제12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12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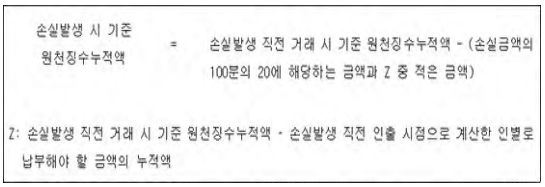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⑮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⑯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5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2조의2제3항 중 "법 제98조제7항"을 "법 제98조제7항·제1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32542호, 2022.3.15.)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한다)"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1)부터 10)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품목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품목별 100만원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80만원
100만원

별표 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의 금액	1)의 금액의 200퍼센트	1)의 금액의 300퍼센트

별표 2 제3호나목1) 표의 과태료 부과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마목 표의 과태료 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관세사법 시행령」 타법 개정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 및「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9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고 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8호, 2022.3.8)

◇ 개정 사유 ◇

□ 접목선인장의 검역병해충 중 병원균 2종에 대해 호주내 분포가 확인되어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할 것임을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통보하였기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안 제1조, 제13조)

나. 호주 수출가능 대목 1품목 추가(안 제2조)

다. 호주 내 분포가 확인된 병해충 2종 삭제(별표)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7호, 2022.3.8)

◇ 개정 사유 ◇

가. (호주산 오렌지·레몬 생과실) 호주 식물검역당국과 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에 대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실파리무발생지역의 세부지역명 삭제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호주산 망고 생과실) 호주산 망고 증열처리 후 봉인하는 단위를 변경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다. (호주산 생감자)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

◇ 주요 개정 내용 ◇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58조)

나. 호주산 생과실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안 제2조)

다. 한-호주 식물검역당국간 협의 완료에 따라 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안 제15조, 제19조, 제32조)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 '화물의 표본추출 방법론'을 기준
- (기존) 전체 상자수의 2% → (변경) 수출 화물별로 오렌지·레몬 생과실 600개 이상

라. 양국간 협의 완료됨에 따라 과실파리무발생지역의 세부 명칭을 삭제(안 제23조)

마. 호주 과실파리 관리 매뉴얼 명칭 변경(안 제25조, 제26조)

바. 양국 간 협의 완료에 따른 호주산 망고 증열처리 후 포장의 봉인 단위 변경(안 제42조)

사. 양국 간 협의 완료에 따라 호주산 생감자의 원산지 증명 방식 변경(안 제51조)

아. 타 고시와 통합·제정됨에 따라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부분 삭제(현행 제4장)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공 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3호, 2022.3.1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4호, 2022.3.1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

터당 529원에서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044) 215-4331, 팩스(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20호, 2022.3.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4항제2호, 별표 제2호나목2),3))
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hebench@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6개 세부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등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법 제29조제3항제2호"를 "법 제2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 및"을 "재산,"으로, "재산에"를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망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를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매각은 제외)까지, 제10호,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제40조제7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법 제19조에 따른"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체납처분"을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입주계약)의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를 "(「항만법」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6.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입주계약)의 해지
10.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제40조제1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6.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입주계약)의 해지

10.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

별표 제2호나목2)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의 법 제70조제2항제7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7호"를 "법 제70조제3항2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사용·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18조의3(사용·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①----------제29조제4항제2호----------법 제29조제4항제2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5항----------.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 ~ ③ (생 략)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	2. 법 제29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5. ~ 21. (생 략)	5. ~ 21.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⑦----------. ----------재산,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망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매각은 제외)까지, 제10호,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 ---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0. ---------- --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입주계약)의 해지
10. ~ 20. (생 략)	11. ~ 21. (현행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⑧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신 설〉	6.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입주계약)의 해지
5. ~ 7. (생 략)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10.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8.·9. (생 략)	11.·12.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 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⑪ ----------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신 설〉	6.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입주계약)의 해지
5. ~ 7. (생 략)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10.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
8.·9. (생 략)	11.·12.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타. (생략)		

2.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생략)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생략)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 제3항 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	법 제70조 제2항 제7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4)~10) (생략)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타. (현행과 같음)		

2. ----------

가.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나.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	-----	-----	-----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0조 제3항 제2의2	-----	-----	-----
4)~10) (현행과 같음)				

단 신

인천세관

RCEP 활용 日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인천세관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3월 17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6' 국가가 참여하는 FTA다.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RCEP 내용과 활용절차, 이를 활용한 일본 수출의 협정관세, 원산지 규정 등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다뤘다.

이어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사업과 일본 현지 무역시장 동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서울세관

이달의 으뜸이 선정 및 유공자 포상

서울세관은 2월의 으뜸이로 이순영 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월 14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순영 행정관은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한편 이날 ▲통관분야 노을진 행정관, ▲심사분야 고수정·박경미 행정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지원센터 운영

광주세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세관 내에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세정지원과 특별통관 지원책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이어 원자재 수급난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은 24시간 통관지원, 수입검사 최소화 등 특별통관 지원책도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미국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스타트업 3개社 계약 성공

한국무역협회가 강남구청,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한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USA 2기' 프로그램에서 3개 스타트업이 미국 기업과 협약체결에 성공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이번 2기 프로그램에는 물류·정보통신(IT) 솔루션, 인공지능(AI) 보안탐지 솔루션, 대체육 등 분야의 국내 11개 스타트업이 미국의 월마트, 아칸소 대학교 등 기업에서 19건의 기술실증(PoC)을 진행했다.

이 중 데이터 익명화 기술 스타트업 '딥핑소스', 정온 물류 플랫폼 스타트업 '에스랩', AI·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솔루션 스타트업 'AI스페라'등 3개社가 미국의 대형 유통·IT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를 체결하고 추가 협력사업을 논의 중이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관세무역정보』는 더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물류에 관한 모든 주제의 원고를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지의 구성이나 편집 방향에 관한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원고 보내실 곳** know@kctdi.or.kr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 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 화 : 02-3416-512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2년 3월 21일(통권 제1979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정보실
가 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빠른 정보 바른 정보

주간 관세무역정보

발 행 인 이찬기
편 집 인 유광수

총 괄 이재석 guro4609@kctdi.or.kr

편집기획 정왕국 kingdom@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마 케 팅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아림디엠

본지에 실린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무역 실무 백과사전

2022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발간 기념 사전 구매 EVENT

2022.3.21 발간
상·하권 전 4,940p 상당

~~정가 120,000원~~ → **10% 할인가 108,0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Point 1 2022년도 **제7차 HSK 전체개정** 반영

Point 2 **신규 발효 FTA**(인도네시아, 이스라엘, RCEP)·**WTO** 등 주요 무역협정세율 수록

Point 3 통합공고, 세관장 고시, 수출입 관계법령 수록

도서구매문의 Tel : 02) 3416-5112 / Fax : 02) 3442-2840

온라인구매처 커스트라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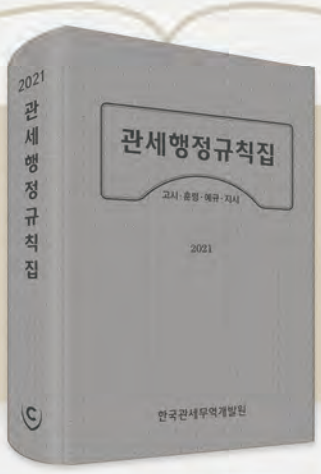

관세·무역 전문가의 필수도서

「관세행정규칙집」 전면개정 증보판 10% 할인

~~정가 145,000원~~ → **할인가 130,5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모든 관세행정규칙을 한 권에. 오직 책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양장 4,003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9 772799 725006 11
ISSN 2799-7251